

용인시 반 운영 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83호
 개정 1999. 2. 26 규칙 제 172호
 2004. 12. 17 규칙 제 395호
 2005. 10. 5 규칙 제 443호
 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
 일괄개정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통·리·반 설치 및 통·리장 정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21. 12. 20>

제2조(위·해촉) 반장의 위·해촉시는 위·해촉장을 교부하고 위·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17>

제2조의2(반장의 위촉)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.

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통·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연서를 받는 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4. 12. 17]

제2조의3(반장의 해촉)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0>

1. 신체·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
2.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3.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진출하였을 때
4.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

[본조신설 2004. 12. 17]

제3조(반상회 토의사항)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. <개

정 2021. 12. 20>

1.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
2.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
3. 물품 배정 등 공개 토의 결정
4.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
5. 반원 여망사항 토의
6. 민방위훈련 실시 등
7.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4조(주부중심 반상회 운영)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.
- ③ 반상회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.
- ④ 반상회에서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.

제5조(여성반장제 확대 실시)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1.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
 2. 활동력이 미미한 남자반장 지역
 3. 남자반장 적격자가 없는 지역
- ② 여반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
2.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
3.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

③ 여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으로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.

제6조(건의사항 존중처리) ① 읍·면·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.

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정사항 실천)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.

제8조(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)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 상황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

② 평가는 읍·면·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.

③ 읍·면·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·면·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, 반에는 읍·면·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을, 명예반장에게는 시장명의로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.

④ 시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반장, 명예반장 반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인에게 시의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케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 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9조(운영규칙)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반 운영 업무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2. 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12. 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43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